

제 안 요 청 서

용역명	바이오산업생산고도화 상생협력 클라우드 시스템(WCEB) 온라인 플랫폼 제작
------------	--



2022. 05. 18

담당	부서	직위	성명	TEL	FAX
한국바이오협회	산업정책본부	부장	김대현	031) 628-0030	031)628-0054
		대리	김영환	031) 628-0041	

목 차

I. 사업 개요	1
1. 사업 일반	1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3. 주요 사업 내용	2
4. 사업 추진 방법	3
5. 사업 추진 일정	3
6. 산출물	4
II. 제안요청 사항	5
1. 요구사항 목록	5
2. 요구사항 상세 내용	7
III. 제안 안내	25
1. 입찰 자격 요건	25
2. 입찰 및 낙찰 방식	25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25
4. 추진 일정	25
5. 제안 유의사항	25
6. 제안서 효력	26
7.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방법	26
IV. 제안서 작성 안내	31
1. 제안서 작성 요령	31
2. 관련 서식	33

[붙임 1~11]

I. 사업개요

1. 사업 일반

- 사업명 : 바이오산업생산고도화 상생협력 클라우드 시스템(WCEB) 온라인 플랫폼 제작
- 사업기간 : 2022년 8월 31일까지 [수정·보완기간 : 사업종료일로부터 2개월]
- 사업예산 : 금 90,000,000원(금 구천만원, VAT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국내 바이오의약품 바이오기업 생산액은 2020년 기준 3조 9,300억 원이며 생산업체 수는 67개의 업체가 있음.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유한양행’ 등 10여개의 1조원대 매출 가능한 한국 토종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약 5개사는 높은 기술력으로 인해 글로벌 시장 대응가능한 바이오기업임. 하지만, 국내 바이오의약품 생산에 사용하는 생산용 생산장비, 원부자재는 뛰어난 해외기술로 인하여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원재료 수입 문제 발생 시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에 큰 타격을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산업부에서는 바이오산업생산고도화사업을 통하여 현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생산용 생산장비, 원부자재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국내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업과 해당 기업의 소통을 위한 플랫폼을 개발함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이오의약품 생산용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지원하고자 함.
- 해당 바이오산업생산고도화 상생협력 클라우드 시스템(WCEB)은 바이오산업생산고도화 전주기 상생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업과 현재 사업에 소속되어 있는 바이오의약품 생산용 생산장비, 원부자재 생산기업의 원활한 소통과 전체사업 연구개발현황 파악과 개발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콘텐츠에 대해 편리한 시스템을 통해 지원하고자 함.
- 현재 바이오산업생산고도화사업의 대상은 국내 바이오의약품 생산용 생산장비, 원부자재 수요-공급 상생협력 협의체 소속 기업(기관)이며 성과에 따라 차기 사업과 연계하여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과제임. 이에 해당 사업의 성과 및 추진 현황에 대한 초기 정보저장체계구축 및 효과적인 정보연계체계구축이 필요함.

3. 주요 사업 내용

○ 기능측면

- 유지보수, 운용, 사용의 효율성과 용이성에 기반한 시스템 개발
- 수요-공급 상생협력 협의체 소속 기업 대상에서 확장하여 바이오의약품 생산용 맞춤형 배지, 원부자재, 생산장비, 분리막 등 기업 관련 커뮤니티 생성
- 수요, 공급기업 정보 기록 항목에 대한 세부내용 구체화, 비즈니스 매칭시스템 구축

○ 디자인 측면

- 사용자 중심의 효율적 정보 접근성을 위한 UI구성
- WCEB 어플리케이션 이용자[수요기업, 공급기업, 시험평가기관, 투자기업 등] 커뮤니티 형성(공급기업 자율적 홍보 할 수 있는 페이지, 주요성과 및 위험요소를 알릴 수 있는 페이지 및 팝업창, 노하우 공유 페이지 등)
- 모바일 기기에서도 다루기 쉬운 UI구성

○ 시스템 구조 측면

- 개발시스템의 표준화(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사용)
- 시스템 확장성을 고려한 클라우드 기반 구조설계
- 공공기관 보안에 안전하고 적합한 공공기관 전용 gCloud Zone에 구축

○ 온라인 교육 관리

- 교육페이지 구분(탭으로 구분) ex) 보안교육 / PMP 교육 / 기타 교육 / 행사 및 홍보영상 등
- 교육 이수 관리(ex. 동영상 끝까지 시청하면 시청했다는 체크 기능, 동영상 편수가 전부 체크되면 test를 볼 수 있는 권한 부여)
- Test를 위해 시험을 등록하는 기능
- Test 이후 조건을 충족하면 수료증 출력 기능
- 강의 평가를 위한 설문 조사 시스템
- 일부 교육은 단계별로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기능 (ex. 기초과목을 수강 완료해야 심화 과목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설정 기능)

○ 회원관리

- 기 개발 완료했던 부분 + 회원 관리 시 회원 구분 (바이오 소재부분, 부품부분, 장비 부분 등의 공급기업, 수요기업 등)
- Google analytics를 이용한 사용자 이용분석
- Google ads를 이용한 웹페이지 광고

4. 사업 추진 방법

- 실무부서 요구조사 실시 및 구축 범위 검토
- 공개 용역 입찰 실시
- 법률에 근거한 계약 체결

5. 사업 추진 일정

- 본 사업의 종료는 2022년 8월 31일이며,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수행 기간 후 2개월 이내(2022년 10월 31일)에 서버 안정화 및 페이지 구성을 위한 유지·보수작업 후 최종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
- 유지·보수기간 동안 “용역보고서”의 내용 중 필요한 사항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스템 반영 및 안정화 작업 수행

세부내용	추진일정		사업 수행 예정 기간 (3개월)						
			사업수행기간			유지보수기간			
			6월	7월	8월	9월	10월		
사업수행 세부계획 수립 및 착수보고									
업무 및 요구사항, 운영 환경 분석									
웹페이지 개발 및 보완									
단위, 통합, 사용자 테스트									
시스템 반영 및 안정화									
최종 사업완료 보고									

※ 일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용역수행사가 협의하여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산출물

- 주요 산출물 목록
 - 요구사항 정의서
 - 프로그램 목록
 - UI정보구조설계서 (IA)
 -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 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

- 계약 기간 동안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기 개발 산출물을 수정·보완
- 수시 발생하는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 후 일주일 이내 회의록 제출
- 유지·보수기간 종료 시점에서 과업내용을 정리하여 최종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II. 제안요청 사항

1. 요구사항 목록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개수
콘텐츠 요구사항	CTR-20-001	WCEB(바이오산업생산고도화 클라우드 시스템) 콘텐츠 요구사항	1
성능 요구사항	PER-20-001	웹페이지 조회	1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20-001	인터페이스 일반 요구사항	1
테스트 요구사항	TER-20-001	테스트 방안	2
	TER-20-002	결함 관리	
보안 요구사항	SER-20-001	보안 정책 및 가이드라인 준수	8
	SER-20-002	운영 환경 이관 보안	
	SER-20-003	소스 프로그램 관리 보안	
	SER-20-004	사업수행 인력 보안	
	SER-20-005	사무실 보안	
	SER-20-006	네트워크 접근 보안	
	SER-20-007	모바일기기 반·출입 보안	
	SER-20-008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	
품질 요구사항	QUR-20-001	기능 구현의 사용자 편의성	6
	QUR-20-002	S/W 공급 및 설치	
	QUR-20-003	S/W 품질 및 보안 관리	
	QUR-20-004	S/W 무상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QUR-20-005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QUR-20-006	손해배상 책임	
제약 요구사항	COR-20-001	시스템 구조 설계	3
	COR-20-002	자료 관리	
	COR-20-003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및 활용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20-001	추진 일정 및 계획	5
	PMR-20-002	일정관리 및 추진상황 보고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개수
	PMR-20-003	산출물 제출 및 검사·검수	
	PMR-20-004	S/W 사업정보 제출	
	PMR-20-005	하도급 승인 및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20-001	기술지원 및 사용자 교육	4
	PSR-20-002	검수지원	
	PSR-20-003	운영지원 및 장애관리	
	PSR-20-004	유지관리(하자보수) 기간 및 요구사항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2. 요구사항 상세 내용

가. 웹페이지 콘텐츠 요구사항

고유번호	CTR-20-001	
요구사항 명칭	WCEB(바이오산업생산고도화 클라우드 시스템) 콘텐츠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웹페이지 콘텐츠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인페이지 ○ 유틸 ○ 마이페이지 ○ 메뉴(서브페이지) ○ 관리자페이지

(1) 메인페이지 구성

- UX/UI 디자인은 기존 메인페이지를 활용하여 진행하며, 간단한 기능개선에 따른 수정 및 변경
- 메인페이지 내에서 협의체를 소개하며 개발 품목을 소개
- 메인페이지에 자주 묻는 질문 위에 공지사항 및 행사일정 표기(공지사항 및 행사일정 내용 중 관리자가 선택하여 메인화면에 띄울 수 있는 기능)

(2) 유틸

- 회원가입에서 소속기관 체크 시 기업담당자가 승인, 기업 이름 입력 시 관리자를 통하여 기업담당자를 설정하는 기능 등을 통하여 회원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함.
 - 모바일 기기에서도 최적화될 수 있도록 포맷 형성
 - SNS를 웹페이지에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업그레이드
 - 교육 종료 후 test를 통한 수료증 발급
 - 교육 이수 관리(ex.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면 시청했다는 체크 기능, 동영상 편수가 전부 체크 되면 test를 볼 수 있는 권한 부여)

(3) 마이페이지

- 마이페이지는 대분류로 Q&A, 온라인교육, 1:1 문의, 회원정보변경 등으로 분류하며 세부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음.
 - 온라인교육 : 이전 시청하였던 온라인교육 리스트들을 볼 수 있도록 최근 수강 교육목록이 표시되며 이를

클릭 시 해당 서브페이지로 진입

(4) 메뉴

- 서브페이지는 아래와 같이 협의체 소개, 개발품목, 기업정보 및 개발현황, 공지사항, Q&A, 온라인 교육, 자료실, 자주 묻는 질문으로 구성
 - 온라인 교육용 자료실: 온라인 교육 서비스의 서브메인으로 구성하여 강의자료를 공유하고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도록 페이지 구성
 - 온라인 교육 관리 페이지는 탭으로 구분 (보안교육/ PMP교육/ 기타교육/ 행사 및 홍보영상 등)
 - 워크샵, 전문가 세미나/연구회등 사업관련 사진 자료실 추가

(5) 관리자페이지

- 관리자페이지는 크게 관리자 관리, 회원 관리, 콘텐츠 관리, 통계 등으로 구성됨
 - 세부구성은 기능을 구현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 및 활용도에 따라 변동 가능
- 관리자 페이지를 통한 세부적인 콘텐츠 관리는 아래와 같이 구성하고자 함.
 - 개발품목 : 관리자가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리스트와 상세페이지로 구성
 - 온라인교육 : 미디어 서버 구축 이후 활용방안 논의
 - 자료실 : 온라인 교육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논의 후 불필요한 자료라 판단될 경우 삭제 통보가 가능하도록 구성
 - 1:1 문의 : 기업담당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며, 알람기능이나 추가 SMS서버(메일서버) 연동 여부는 사업비 내에서 별도 협의 후 추진
- 통계 자료는 구체화된 구성을 진행하기에는 예산에 무리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므로 예산에 따라 한정하여 산정
 - Ex) Google analytics 활용

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20-001	
요구사항 명칭	웹페이지 조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페이지에서 정보 요청 시 응답시간 정의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가 요청한 시각으로부터 3초 내에 완전히 화면에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되는 동영상, 이미지 등이 끊임없이 표시되어야 하며, 끊어졌을 경우에는 5초 이내에 연결되어야 함 ○ 예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질의, 다운로드 및 동영상, 플래시 이미지 포함시 - 동시 사용자 성능을 초과하는 경우

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20-001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문지식이 없는 사용자도 쉽게 시스템을 통합·운영 가능하게 구축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관적이고 명확한 화면 및 웹페이지 구성 ○ 웹페이지 간 UI 및 용어 일관성 유지 ○ 해당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용자의 입력을 최소화 ○ 시스템의 모든 기능은 키보드, 마우스를 사용하여 관리 가능해야 함 ○ 화면상에 사용자에게 열람이 인가되지 않은 개인정보 노출 금지
산출 정보	운영 매뉴얼(사용자, 관리자 지침서)	

(1) 모바일 기기 웹페이지

- 모바일 기기에서도 사용하기 쉽게 웹페이지 인터페이스 구성 (모바일 기기에서는 깨지는 이미지 수정 및 웹페이지의 버튼 터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성)

라.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20-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테스트 및 개선 방안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업무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사용자 테스트 수행 ○ 단위테스트, 통합시스템, 시스템테스트는 개발 및 시험 환경에서 수행하며 사용자 테스트는 운영 환경에서 수행한다. ○ 개선사항에 대해 개발초기부터 완료되기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에러조치 확인, 에러만이 아닌 불편사항에 대해서까지 보완)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함 ○ 시험운영에서는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테스트 계획서에 데이터, 절차/방법, 일정/주기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
산출 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고유번호		TER-20-002
요구사항 명칭		결함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결함에 대한 관리 방안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사항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사용자테스트 등 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 문서화하여 관리 ○ 발생 결함에 대한 조치계획(조치일정, 조치담당자 등)을 수립하여 처리
산출 정보		결함관리대장

마.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20-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정책 및 가이드라인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안 정책 가이드라인 준수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단계부터 구현·시험·이관까지의 과정에서 일관성 있는 보안 요구사항 적용을 통한 안전한 운영 환경을 조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법적 보안 요구사항 준수(최신 법률 및 지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 교육부 정보보안 관리 지침 및 주관기관 정보보안규정, 보안업무규정, 개인정보보호규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 OWASP Top10(2020) 웹 취약점 및 국가정보원 8대 보안 취약점 조치 권고사항 - 교육.연구기관 웹서버 보안취약점 대응 가이드 ○ 주관기관 전산보안 인프라 연계(IPS, 웹방화벽, 개인정보차단 등) 및 정책 준수 ○ 수주업체는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국가정보원)에 의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제제조치를 받음 ○ 추후 별도로 보안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업무 및 규정을 준수

고유번호		SER-20-002
요구사항 명칭		개발 및 시험 환경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 코딩 방법 제시 및 취약점 진단 수행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기능 개발 및 기존 시스템 변경 시 기술적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큐어코딩 보안 가이드라인 준수 ○ 기능 개발 및 변경 설계 완료 후 시험단계에서 기술적 보안 취약점 진단을 주관기관과 협의한 보안진단 도구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 및 반영 조치하여야 함.

고유번호		SER-20-003
요구사항 명칭		운영 환경 이관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개발 및 시험 완료 후 운영 이관 시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시스템 개발은 운영 환경 외 별도의 분리된 환경에서 수행 ○ 개발 완료된 소스 프로그램의 운영 이관 전 보안 요구사항 반영 및 취약 제거 조치 여부, 개발자 계정 및 권한 삭제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을 완료 ○ 운영환경으로의 이관 시 주관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수준의 이관 전략 및 문제 대응 방안을 수립·이행

고유번호		SER-20-004
요구사항 명칭		소스 프로그램 관리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스 프로그램 보관 및 변경 이력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운영 장애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환경에 소스 프로그램을 보관 ○ 소스 프로그램 변경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하여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정보(변경 일시, 사유 등)의 이력 관리를 수행

고유번호		SER-20-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인력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 및 관련 교육 이행 요구사항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인원은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 및 물품 반. 출입대장 제출 ○ 참여인원에 대한 법률 및 주관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주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및 서류 등은 전량 주관기관에 반납 또는 완전 삭제 실시 후 협약서 제출 ○ 프로젝트 수행 기간 내 연1회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며, 이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관기관에 제출 ○ 교육방법은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교육 또는 그에 준하는 자체 교육방법 제시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

고유번호	SER-20-006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실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간에서 과업수행 시 주관기관 정보보안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물리적 보안활동 수행 - 신분증 패용 - 일일보안점검 - 출.퇴근 시 사무실 출입 보안 - 중요문서 노출 금지 및 서랍, 캐비닛 시건 - 그 외 물리적 보안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타사항

고유번호	SER-20-007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접근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 접근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 시도 금지 ○ 메신저 및 원격관리시스템 이용 금지 ○ 권한 이외의 내부 시스템에 대한 접근 금지 ○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내부망 접속은 반드시 정보보안 담당부서의 승인 후 접속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가 원칙.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고 사업담당자를 통하여 분임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함

고유번호	SER-20-008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기기 반·출입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기기 (노트북 등) 반·출입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업체는 PC, 노트북 및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주관기관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으나, 주관기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주관기관 정보보안규정에 따라 반·출입하며, 보조기억매체 반·출입 신청서 및 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함. - 반입 기기는 반드시 물리적 통제(시건장치 등)가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기만을 허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기 반입 전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 반입된 기기는 주관기관 정보보안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유지하며, 주기적 정보보안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NAC) - 백신 프로그램(V3 등) - 휴대용 저장매체 제어 프로그램 - 개인정보 관리 프로그램 - 사이버 보안 진단(내 PC지키미) 프로그램 - 정보시스템(서버 등) 접근제어 프로그램 - 그 외 정보보안을 위하여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프로그램 ○ 반입된 기기는 OS별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이상) 문자·숫자·특수문자 조합 9자리 이상의 패스워드를 설정하며, 중요정보가 저장된 기기는 CMOS 패스워드를 설정하여야 함. ○ 반입된 기기는 임의로 반출할 수 없도록 물리적 방법으로 통제하며,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해야 함.
--	---

고유번호	SER-20-009	
요구사항 명칭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보안요건 준수 사항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장소 구성 시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TV는 통제구역에 영상 저장, 저장기한 준수(최소 30일 이상) ○ 수행사에서 사용하는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을 허용해야 함 ○ 기관 외부에서 내부의 시스템 개발 PC 및 기관 시스템에 원격 접속 금지 ○ 참여인력의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되 내부분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 참여인력의 'root' 계정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적인 접근을 허용하지 않아야 함 ○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함 ○ 참여인력의 작업내용 확인을 위해 작업이력 로깅기능을 구축해야 함 ○ 사업의 책임자는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모든 산출물을 저장하거나 용역사업 책임자가 지정한 PC(인터넷 연결차단)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함

-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관 인가 후 반입·반출해야 함
 - 반출 시 정보보안담당관 통제 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 전산장비 반입 반출시 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및 자료 무단 반·출입 여부를 확인해야 함
- 휴대용 저장매체는 정보보안담당관 승인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무단 사용 방지를 위해 비밀번호 설정 등이 되어 있어야 함
-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는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함
- 매주 정기적으로 최신 백신 프로그램 업데이트 설치 및 전체 파일 검사
- 비인가 저장매체·통신기기 접속을 통제하여야 함
 - 매체제어 미설치 전산장비는 외부기기 연결단자에 보안스티커를 부착
- 작업장 PC는 키보드 및 마우스 연결을 위한 USB 포트를 제외하고, 남은 USB 포트는 보안스티커 부착 또는 USB LOCK 등에 대한 조치
- 업무망 접속용 전산장비와 인터넷망 접속용 전산장비를 구분하여 활용 및 망간 혼용 금지
 - 장비 반입 시 업무용 PC 또는 인터넷용 PC를 구분하여 반입하여야 함
 - 업무용PC를 운영 중인 공간과 구분·분리하여 최소 운영
- 참여인원의 업무망 PC에 대한 인터넷 연결을 차단하고, 인터넷 접속이 허용된 PC에 대해서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하여야 함
 - 업무 수행 및 업무자료 저장 금지(문서편집기 등 설치금지)
 - 토렌트,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활용 원천차단
- 참여인력의 업무용 PC 및 인터넷용 PC에 대한 비밀번호(CMOS, 윈도우)·화면보호기 설정을 하여야 함
- 시스템 패스워드는 정보보안 담당자가 별도로 기록·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하여야 함
- 비인가 무선비인가 무선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고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반입 통제해야 함
-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수단을 강구(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S/W설치,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조치 등)
-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삭제, driver 비활성화 등)를 해야 함
- 수행업체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하며,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바.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20-001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사용자 편의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편의성 확보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용자가 쉽게 시스템을 통합·운영 가능하게 구축 ○ 전자정부서비스 사용자경험(UX) 적용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화면과 기능의 설계 및 구현 - 사업 초기에 현행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경험(UX) 측면의 평가를 통하여 문제점 및 사용자 학습욕구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 도출 및 조치

고유번호		QUR-20-003
요구사항 명칭		S/W 품질 및 보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 S/W에 대한 주기적인 품질(성능 포함) 및 보안관리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용 S/W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데이터 보안관리 절차 수립 ○ 응용 S/W 유지보수 및 고도화, 개인정보보안 강화 등 사업추진 시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제공하는 홈페이지 보안관리 등 관련 정부지침을 준수하는 등 국가기관 지침에 따른 보안성 강화

고유번호		QUR-20-004
요구사항 명칭		S/W 무상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무상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조건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시스템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함 ○ 수주업체는 천재지변 또는 고의적 사고를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하자 보증기간 중 무상으로 신속하게 보수 또는 교체하여 운영의 중단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며, 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시는 수주업체의 부담으로 변상조치 하여야 함 ○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 장애 또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 해결 시까지 한국바이오협회에서 요구하는 개발 참여자를 인원수에 관계없이 투입하여야 함 ○ 수주업체는 하자발생 시 통보 접수 후 구축된 S/W의 경우 발주처와 협의 된 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 정상가동 되도록 하여야 하며, 복구 후 2일 이내에 문서로 그 원인과 해결사항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수주업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자보수 활동에 포함시켜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한 제품(S/W)에 대한 전 시스템 기능 오류 보장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 - 기타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등 <p>○ 도입되는 전 품목의 유상유지보수 비율은 구축비용의 10%를 넘을 수 없음</p>
산출 정보		결과 보고서

고유번호		QUR-20-005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에러복구, 장애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 테스트 결함 발생을 및 조치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스트가 기간 동안 발견한 결함수와 결함의 지속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 결함 발생율이 5% 이상이거나 중대 결함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 오픈 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결함 지속 시간의 최대 한계값은 1시간 이하여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 조치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고유번호		QUR-20-006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규정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 중 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는 수행업체에서 한국바이오협회에 배상하여야 함

사.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20-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조 설계에 대한 제약사항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구축되어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 가능해야 함 ○ 시스템 설계, 데이터 유형, 사용자 유형 등이 고려되어 구조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1) 클라우드 시스템

- 시스템 확장성을 고려한 클라우드 기반 구조설계
- 공공기관 보안에 안전하고 적합한 공공기관 전용 gCloud zone에 구축
- 클라우드 시스템 기반 공용플랫폼(교육 및 비즈니스) 운영

고유번호		COR-20-002
요구사항 명칭		자료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 중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제약사항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 낙찰 업체는 한국바이오협회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 자료를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용역 낙찰 업체는 한국바이오협회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 자료를 대장으로 관리하고, 용역 종료 후 한국바이오협회로 반납하여야 함 ○ 용역 낙찰 업체는 계약과제 수행 중 취득한 자료를 한국바이오협회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고유번호		COR-20-003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의 공동귀속 및 활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및 SW산출물 반출 절차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된 산출물은 공공목적을 위해 용역수행사 및 당 사업 주관부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교육부 등과 공동 활용 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 전송권, 반송권, 초상권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저작권의 경우 개발 업체가 관련 저작자와 협의, 사용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여 개발 내용이 저작권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차후 저작권법 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함 - 개발에 필요한 자료(동영상,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처리는 개발 업체에서 전담하여 모두 처리해야 하며, 추후 해당 자료에 대한 분쟁 발생 시 개발

		<p>업체에 모든 책임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주업체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수행업체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주업체는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대상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로 보안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수주업체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수주업체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	--

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20-001
요구사항 명칭		추진 일정 및 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추진일정계획 정의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일자 및 내용에 기초하여 작업계획을 용역 낙찰 업체에게 제시 받음 ○ 상기 작업계획, 산정결과에 기초하여 사업단계별로 TASK 수준의 일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구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단위별 일정계획 - 투입인력별 일정계획
산출 정보		착수계, 수시·월·완료 보고서

고유번호		PMR-20-002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및 추진상황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일정관리 및 추진상황 보고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 낙찰 업체는 용역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용역 추진 상황을 다음과 같이 한국바이오협회에 보고함 ○ 착수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과업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작업 일정계획, 장비납품 및 설치계획, 인력투입계획, 보고계획, 보안계획, 교육계획, 백업·복구계획, 유지보수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사업책임자 이력서, 보안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음 ○ 정기 및 수시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주업체는 사업진행에 대한 작업자의 동원, 업무내용, 진척상황,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별, 월별단위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간보고 :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 등 보고 · 수시보고 : 긴급 변경사항 및 서면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 완료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료보고 : 수주업체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추진 전체 산출물을 기본으로 하되 발주처는 필요시 추가적인 산출물을 요구하고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음
산출 정보		착수계, 수시·완료 보고서

고유번호	PMR-20-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 및 검사·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계별 산출물 제출 및 시스템 검사·검수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사는 계약 후 한국바이오협회와 합의 한 산출물을 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 시기에 따라 종류별 산출물을 제출하되, 사업관리 및 검수를 위한 각종 업무 보고를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작성하여 보고하는 수시보고 체계 마련 - 모든 단계에서 산출되는 자료는 완료보고 시 외장하드 또는 USB 메모리를 통해 디지털 원본 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합의한 표준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출력본 2부 및 외장하드 2개) ※ 사업진행과정에서 산출물이 추가/제외 될 수 있으며 유형 및 범위는 협의를 통해서 결정, 산출물은 상호 협의하에 조정 가능 ○ 사업 완료 후 발주자 측 감독자 입회하에 납품시스템에 대한 성능 검사 실시 ○ 수주 업체는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계약서의 요구조건을 충분히 포함하는 시험항목 및 방법 등을 기술한 검수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검수 실시 ○ 수주 업체는 본 사업에 포함된 모든 시스템 검사 및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수주 업체의 부담으로 함
산출 정보	단계별 산출물, 검수계, 검수결과보고서	

고유번호	PMR-20-004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수주기업 프로젝트 PM이 1차 작성하며, 사업 수주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공인 기능점수 전문가 또는 기관을 통해 본 사업에 대한 기능점수를 산출하여 실적 정보를 등재하고 관련 소요 비용은 사업수행업체에서 부담

고유번호		PMR-20-005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거한 하도급 승인 및 관리사항 정의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찰된 업체는 원칙적으로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수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필요 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반드시 주관기관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함 ※ 컨소시엄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산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파견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임을 명시) ○ 하도급 계약은 「소프트웨어사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지 아니 함 ○ 주관기관의 승인에 의하여 본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분의 수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때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9조에 의거 주관기관이 제시한 기준(아래참조)에 부합하는 조건으로 적정 대가를 산정한 뒤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 평가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p style="text-align: center;">하도급 대금 지급 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구분</th> <th>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직접인건비</td> <td>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한 『2020년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노임단가의 100%</td> </tr> <tr> <td>제경비 및 기술료</td> <td>위 직접인건비의 20% 이상</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18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지침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함 ○ 하도급 적정성 여부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구분	기준	직접인건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한 『2020년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 및 기술료
구분	기준						
직접인건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한 『2020년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 및 기술료	위 직접인건비의 20% 이상						

자.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20-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및 사용자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및 완료 후 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의 범위는 S/W 운영관리 등 구축되는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분야를 포함 ○ 수주업체는 발주처의 운영요원에게 분야별 기술, 장애조치방법, 효율적 운영방법 등의 관리자 교육을 1일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교육쿠폰 및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제공하여야 함 ○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공급자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응용 S/W 품질 향상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 지원 ○ 시스템 활용도 및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기관, 사용자 및 운영자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지원 방안 수립 ○ 시스템 설치 후, 관련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향후 수요기관의 기술지원 요구가 있을 시 최대한 기술 자문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하여야 함 ○ 검사·검수 시 관련 문서,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각종 구성도 등을 포함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운영 매뉴얼(사용자/관리자 지침서)

고유번호		PSR-20-002
요구사항 명칭		검수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지원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주업체는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계약서의 요구조건을 충분히 포함하는 시험항목 및 방법 등을 기술한 검수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검수 및 지원 실시 ○ 수주업체는 본 사업에 포함된 모든 시스템 검사 및 테스트를 수행하고, 제반 경비는 수주업체가 부담함

고유번호	PSR-20-003	
요구사항 명칭	운영지원 및 장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지원 및 장애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운영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이상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운영지원 및 장애관리 방안 제시 및 관리 ○ 현행 시스템 장애발생 시 원인 분석 및 복구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체계 수립 및 기존 유지보수 업체와의 비상 연락망 가동 등 장애대응 방안 제시 및 관리 ○ 시스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 장애조치 완료 후에는 처리사항에 대한 기록관리 수행

고유번호	PSR-20-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하자보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하자보수) 기간 및 요구사항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동안 신규 개발, 개선, 보완한 시스템의 품질 및 하자 보증기간은 사업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동기간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즉시 처리해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주업체는 천재지변 또는 고의적 사고를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하자 보증기간 중 무상으로 신속하게 보수 또는 교체하여 운영의 중단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며, 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시는 수주업체의 부담으로 변상조치 하여야 함 ○ 하자담보 기간 중 시스템 장애 또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원인 파악 후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수주업체는 하자 발생 시 통보 접수 후 구축된 S/W의 경우 발주처와 협의된 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 정상가동 되도록 하여야 하며, 복구 후 2일 이내에 문서로 그 원인과 해결사항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용역수행사는 하자보수 보증서 또는 증권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도입되는 전 품목의 유상 유지관리 비율은 구축비용의 10%를 넘을 수 없음

IV. 제안 안내

1. **입찰 자격 요건** : 세부입찰참가 자격사항은 입찰공고서에 따름.

2. 입찰 및 낙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공동 수급불허)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입찰공고서에 의함
- 입찰관련 서식 및 관련증빙서류 등은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것
- 기타 한국바이오협회 공고 서류
- 제출기한 및 제출 장소 (입찰공고서에 의함)

4. 추진 일정

- 입찰참가(제안서 제출 포함) 일시 및 장소 등: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설명회 : 미실시
- 제안서 기술평가 일시 및 장소
 - 기술평가 : 제안서 접수 마감 이후 (예정, 세부일정은 추후 통보)
- 문의처 : 한국바이오협회
 - 사업 담당 : 한국바이오협회 산업정책본부 김대현 (전화 : 02-628-0030)
 - 계약 담당 : 한국바이오협회 산업정책본부 김영환 (전화 : 031-628-0041)

5. 제안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요령 준수
-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서를 포함하여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반환 및 공개불가
- 제안사는 제안평가 결과에 승복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이에 대한 확약서 ('붙임 2' 참조)를 한국바이오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6. 제안서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면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선정된 업체는 한국바이오협회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하고, 본 사업의 수주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한국바이오협회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외부에 누출하여서는 아니 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다름이 밝혀진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선정된 후에라도 사업자 선정을 무효로 함

7.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방법

가. 입찰 및 낙찰절차 근거

- 입찰방식 및 낙찰자 결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평가 방법

- 현장설명 없이 제안서 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입찰 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 제출
- 한국바이오협회의 장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프트웨어 기술성평가기준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기초한 평가

기준에 의해 평가를 실시함

-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나누어 평가하고 적절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평가점수에서 소수점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함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기준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3	15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3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3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3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절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3	
기술 및 기능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25
	보안 요구사항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데이터 전환을 위해 책임 조직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5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요구 충족도는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계약사항	계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계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1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5	15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5	
	개발 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5	20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5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5	

		평가한다.		
	유지보수 및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 등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5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가		10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바탕으로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재구성함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함
- 상 순위 업체와의 협상에 의하여 협의가 이루어지면 후 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
- 단독입찰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의해 재공고 없이 선정(평가)위원회 추진 예정
- 유찰 또는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예정

라. 협상방법 및 기준

- 선정결과는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협상내용 및 범위는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단,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마. 기타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의2(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심의위원회)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의5(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에 의거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한국바이오협회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명시함

V.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 목차(예시)

〈 목 차 〉	
I . 제안개요	
II .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붙임 6-9)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III . 기술부문	
1. 시스템 구성도	
2. 개발 방법론 활용 방안	
3.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방안	
4.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지원방안	
5. 시스템 시험 및 운영방안	
IV . 사업관리부문	
1. 품질보증계획	
2. 추진일정계획	
3.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5.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V . 지원부문	
1. 시험운영계획	
2. 교육훈련계획	
3. 유지관리계획	
4. 기술이전계획	
5. 기타지원사항	

※ 제시된 제안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은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 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 목차의 항목 중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나. 제안서 작성(권고 사항)

- 제안서는 원본과 요약본으로 작성하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지 규격을 권고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자율적으로 작성
 -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제안서는 A4 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을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의 요금은 한화(원)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2. 관련 서식

구 분	내 용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붙임 2	확약서
붙임 3	청렴서약서
붙임 4	가격제안서
붙임 5	비밀유지 계약서
붙임 6	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붙임 7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붙임 8	유사 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붙임 9	참여인력 이력사항
붙임 10	정보보안서약서(용역업체 대표자, 참여인력용)
붙임 11	기술적용계획표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접수번호	미표기	입찰일자	2022년 월 일
입찰건명	바이오산업생산고도화 상생협력 클라우드 시스템(WCEB) 온라인 플랫폼 제작		
입찰참가신청	상호(법인명칭) : 사업자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 표 자 : (인)		
금번 2022년 05월 18일자로 공고한 「바이오산업생산고도화 상생협력 클라우드 시스템(WCEB) 반응형 웹페이지 제작」 용역에 대한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한국바이오협회에서 정한 제안요청내용을 모두 수락하고 제반서류를 갖추어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한국바이오협회장 귀하			

협약서

상기 본 업체는 귀 기관의 「바이오산업생산고도화 상생협력 클라우드 시스템(WCEB) 반응형 웹페이지 제작」 용역에 입찰 참가신청하며 귀 기관의 공정한 심사 및 객관적인 내부 절차에 의한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22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바이오협회장 귀하

청렴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바이오협회장 귀하

비밀유지 계약서

(계약명: 바이오산업생산고도화 상생협력 클라우드 시스템(WCEB) 반응형 웹페이지 제작)

한국바이오협회(이하 “계약자”라 한다)와 (주)OOOOOOOO(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바이오 산업생산고도화 상생협력 클라우드 시스템(WCEB) 반응형 웹페이지 제작」 사업을 계약자가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계약자”의 「바이오산업생산고도화 상생협력 클라우드 시스템(WCEB) 반응형 웹페이지 제작」 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의 비밀정보란 “계약상대자”가 업무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하며, “계약상대자”가 비밀정보를 누출하였을 경우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분서
3.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4.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5. 사용자계정 ·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8. 그 밖에 한국바이오협회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경우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바이오산업생산고도화 상생협력 클라우드 시스템(WCEB) 반응형 웹페이지 제작」 사업의 계약 체결일부터 종료일까지 (단, 계약을 연장할 경우 연장된 계약의 종료시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5조 (정보취급자) “계약상대자”는 “계약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내 목적상 부합하는 최소한의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비밀정보 취급자 현황 및 보안서약서를 “계약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완료 이후에라도 “계약자”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계약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계약자”의 판단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

명하는 서류와 보안확약서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계약자”에게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타 업체에게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9조 (내부규정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계약자”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공사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등) ① 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비밀정보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절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피해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계약자”의 보안정책을 “계약상대자”가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별표2]의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제2조의 비밀의 내용』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그 결과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의 침해로 인하여 “계약자”에 이의 제기, 소송, 기타 권리 침해주장이 제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하여 “계약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계약자	계약상대자
한국바이오협회	주식회사 00000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삼평동)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코리아바이오파크 C동 1층	

성 명 : 고 한 승 (인) 성 명 : 0 0 0 (인)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규정 제16조(개인정보의 취급위탁)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 위규자 및 업체 직속 감독자 중징계 요구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규자 및 업체 직속 감독자 중징계 요구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 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규자 및 업체 직속 감독자 중징계 요구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관련근거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국가정보원 2014.3>

※ 사업 환경에 따라 수정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함

[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위약금 부과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위약금 부과기준

구분	위규수준			
	A	B	C	D
위규사항	심각1건	중대1건	보통2건 이상	경미3건 이상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금액의 1%	사업금액의 0.5%	사업금액의 0.3%

※ 상기 내용은 예시이며, 사업 환경에 따라 수정하여 작성

※ 관련근거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국가정보원 2014.3>

※ 사업 환경에 따라 수정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함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정보

1.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분서
3.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4.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5.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6.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7.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 누출 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 해당
 - *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200.04-161-12, 2012.1.1) 제56조 참조
8.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9.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10.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11.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의 구분,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계			

[붙임 8] 유사 용역 수행 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유사 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관련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본 란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하며, 첨부하지 않은 사업은 인정치 않음(증빙서류 : 실적증명원, 계약서 사본 등)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 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정보보안 서약서(용역업체 대표자)

(주) 대표이사 은 2022. . 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수행하는 「바이오산업생산고도화 상생협력 클라우드 시스템(WCEB) 반응형 웹페이지 제작」 사업의 주관사업자로서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 기간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법인 또는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를 따를 것을 각 호와 같이 서약합니다.

1. 당사는 한국바이오협회(이하 “협회”이라함)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내부 정보, 개인정보, 기타 모든 업무에 관련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바이오협회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협회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명시적으로 접근을 허가 받은 시설과 정보만을 이용하겠습니다.
3. 당사는 협회의 사전 동의 없이는 내부정보 및 기타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문서나 자료 및 결과물 등을 어떠한 형태로도 외부로 반출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업무가 종결되거나 협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회가 제공한 모든 자료와 자산을 즉시 반납하겠습니다.
5. 당사는 업무수행의 결과 산출된 모든 결과물(보고서, 도면, 컴퓨터 프로그램, 장치 등)에 대한 제반 권리가 한국바이오협회에 귀속됨을 인정하고, 협회가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협조하겠습니다.
6. 만일 본 서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당사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으며, 본 서약 위반 행위로 인하여 협회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2022년 월 일

용역업체명 :

대 표 자 : (인)

한국바이오협회장 귀하

정보보안 서약서(외부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바이오산업생산고도화 상생협력 클라우드 시스템(WCEB) 반응형 웹페이지 제작」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비밀, 행정문서, 중요정보, 개인정보 등 비공개자료의 열람취급 후 한국바이오협회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업무취급 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장소 여하를 막론하고 누설 및 공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이 이를 위반 시에는 관계법규를 포함한 어떤 법적 책임 등의 조치에도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사업참여인력)	소 직 성	속 : 급 : 명 :	
			(서명)

서약집행자 (현업부서 담당자)	소 직 성	속 : 급 : 명 :	
			(서명)

한국바이오협회장 귀하

[V]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바이오산업생산고도화 상생협력 클라우드 시스템(WCEB) 반응형 웹페이지 제작
작성일	2022년 월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정보화 기본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전자서명법 • 전자정부법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통신비밀보호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표준(행정안전부고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구분	항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